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3-162 |
|----------|--------|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납세자보호의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건 심의 범위 변경(안 제8조)

나.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기준 변경(안 제16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5.~10. 25.(제출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5)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2023. 1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초과”를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2회 이상”을 “3회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회”를 “3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안건 심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p> <p>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초과인 안건</p> <p>2. (생략)</p> <p>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p> | <p>제8조(안건 심의 등) ② ----- ----- ----- -----</p> <p>1. ----- ----- ----- 이상 -----</p> <p>2. (현행과 같음)</p> <p>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 ----- 3회 이상 --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p> <p>② ----- 3회 - ----- ----- ----- ----- ----- ----- ----- ----- ----- -----</p> <p>-----</p>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감사담당관 김명선 |
| 연 락 처 | 02-3153-8171 |